

제 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제 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 년 03 월 26 일 (화요일) 오전 09 시 00 분

2. 장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848 해마로푸드서비스주식회사 진천공장 2 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의안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각 의안별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제 1 호 의안 : 제 4 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 중 현금배당(1 주당 30 원) 포함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 명)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당사의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을 당사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 년 01 월 01 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년 0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익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19.08.23 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본인)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8. 안내사항 등

금번 총회 시 주총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03월 11일

해 마 로 푸 드 서 비 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전 명 일 (직인생략)

[별첨 1.] 제 4 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세부사항

제 1 호 의안: 제 4 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 중 현금배당(1 주당 30 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 8 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	제 8 조 <삭제>	주권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삭제 (전자증권법 §25 ①)
<신설>	제 8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 14 조 (명의개서)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반영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삭제>	주식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8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좌동)</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주주명부 기재변경일 단축</p> <p>문구 정비</p>
<p>제 21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21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15 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p>
<p>제 22 조 (소집시기)</p> <p>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p>	<p>제 22 조 (소집시기)</p> <p>① (좌동)</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문구 정비</p>
<p>제 34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신설></p>	<p>제 34 조 (이사 및 감사의 수)</p> <p>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상법상 예외규정을 추가 반영</p>
<p>제 48 조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p> <p>2. 보수위원회</p>	<p>제 48 조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p> <p>2. 보수위원회</p> <p>3. 내부거래위원회</p>	<p>이사회 내 위원회 추가 반영</p>
<p>제 51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1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법률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내용반영</p>
	<p>부 칙</p> <p>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21 조의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제 3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신규 여부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감사	이 광 택 (48.11.16)	신규 선임	1975~1976 한국일보(The Korea Times) 기자 1976~1977 (재)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사회 교육간사 1978~1985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1978~1994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송실대,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 인천대, 명지대, 경기대, 국제대 등 강사 1987~1988 Bremen 대학교 노동정치 연구소 연구위원 1988~199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수과정 주임교수) 1989~2009 (재)한국노사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부원장 1994~2014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법률상담센터 소장, 법학연구소장, 사회법연구센터장) 1993~(現)산업사회연구소 소장 2014~(現)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사회	해당없음	2017.03.24 ~2019.03.26 해마로푸드 서비스(주) 사외이사

제 4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 수(사외이사 수)	7(3)	7(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 억원	60 억원

- 전기 이사보수 집행금액: 34.94 억원

제 5 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 억원	5 억원

- 전기 감사보수 집행금액: 0.89 억원

제 6 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제 4 조) 퇴직금 산정 조정의 건

구분	종전	개정
제 4 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 = 퇴직 전 3 년간 평균급여 × 1/10 × 재직연수 × 지급률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 = 퇴직 전 1 년간 평균급여 × 1/10 × 재직연수 × 지급률

나. (제 4 조) 지급률 조정의 건

종전		개정	
직급	지급률	직급	지급률
회장, 부회장, 사장	3 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1.5 배
부사장	2.5 배		
전무	2 배		
상무	1.5 배		
이사, 감사	1 배	이사, 감사	1 배